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0. 19 선고 2021나14914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연합회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흥운

담당변호사 정성일

피고, 피항소인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

담당변호사 도명옥

변 론 종 결 2021. 9. 14.

판 결 선 고 2021. 10. 19.

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2. 17. 선고 2020가소134470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,638,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7. 17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(차량번호 1 생략) 차량(이하 ‘원고 차량’이라 한다)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, 피고는 (차량번호 2 생략) 차량(이하 ‘피고 차량’이라 한다)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.

나. 원고 차량은 2020. 2. 4. 22:37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앞 이면도로를 나와 편도 5차로의 도산대로 비보호 사거리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중 맞은 편 이면도로에서 나와 직진하던 피고 차량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(이하 ‘이 사건 사고’라 한다).다.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 8,597,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.

라. 피고는 D심의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8,597,000원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심의청구를 하였고, 위 심의위원회는 2020. 5. 4. “청구인(피고)의 책임비율 20%, 피청구인(원고)의 책임비율 80%”이라는 취지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. 피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의청구를 하자 위 심의위원회는 2020. 7. 6. “청구인(피고)의 책임비율 10%, 피청구인(원고)의 책임비율 90%”이라는 취지의 재심의결정을 하였다.

마. 피고는 2020. 7. 10. 원고에게 총 손해액 9,097,000원(수리비 8,597,000원 + 자기부담금 500,000원) 중 90%에 해당하는 8,187,3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, 이에 따라 원고는 2020. 7. 16. 총 손해액 9,097,000원의 90%인 8,187,300원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500,000원을 제외한 7,687,3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0호증, 을 제1 내지 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을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사고는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직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50% 이상이므로,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과실비율을 90%로 산정하여 지급한 구상금 중 원고의 과실을 초과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.

나. 판단

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, 충돌 부위 등 제반 사정과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,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90:10으로 봄이 타당하다.

○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편도 5차로의 도산대로로 진입할 수 있는 +자형 교차로가 있는 곳인바, 위와 같이 이면도로에서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여 5차로인 도산대로로 진로변경하려는 원고 차량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핀 후 차로변경 방법을 준수하여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는바,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맞은 편 이면도로에서 나와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갑자기 도산대로로 좌회전을 시도하였고, 이를 확인한 피고 차량이 급정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 차량과 충돌한 원고 차량에게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다(원고는, 피고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영향이 없다).

○ 한편,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시야를 방해하는 특별한 장애물이나 기상상황이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으로서도 자신이 진행하던 도로 방향으로 진입하려는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유사시 신속히 차량을 제동할 수 있도록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발생을 피하거나 적어도 그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임에도 만연히 직진하다가 충돌 직전에서만 감속하는 등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.

다. 소결

따라서 위와 동일한 과실 비율을 적용한 D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

구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, 이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.

3. 결 론

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창현, 판사 강영훈, 판사 노태헌